

수원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2220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2220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15723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주식회사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

원고보조참가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송성락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수열, 조준오, 위

제강

변론종결 2022. 3. 16.

판결선고 2022. 4. 1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15723 판결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채무자 A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기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에 관하여 ① 2018. 6.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2018. 12. 27.자 변경계약 포함), ② 2018. 10.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2018. 12. 27.자 변경계약 포함)은 각 부인되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각주 1)을 다음의 내용으로 바꾼다.

『회생담보권 시·부인명세서(을다 제14호증 시부인표 제10쪽)에는 이 사건 2018. 6. 26.자 및 2018. 10. 18.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을다 제15호증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액은 23억 8천만 원인바, 이 사건 2018. 10. 18.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회생담보권(채권최고액: 50억 원)에 대하여도 관계인의 이의가 없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 “⑤” 다음에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18조, 제141조),”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양우, 판사 허양윤, 판사 정현식

별지